

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사례 [의견표명]

□ 민원 제목 : 학교 및 공동주택 밀집 구역 보도 확장 건의

□ 신청 원인

- 순천시 조례동 1352-2번지 등 보도 구간은 초등학교와 공동주택 단지 사이 2차선 도로와 연결되어 학생 통학 및 생활 보행 수요가 많은 실정
- 보도 폭이 갑자기 축소되고 보도 중심에 전신주 등이 설치돼 있어 유모차, 휠체어 등이 차도 이용으로 사고 위험 상존
- ※ 대상지 2차선 도로는 연향1지구 중심상업지 정체 구간을 우회하여 조례동 중심상업지로 이동하는 교통량이 많은 상태

□ 피신청인 등의 입장

- 현장 확인 결과, 보도 폭이 급격히 좁아져 그 상태만으로도 보행인의 교행이 어렵고 전신주 등 지장물로 인해 보행자 안전 확보가 미비한 상태
- 해당 보도 주변에는 초·중·고등학교와 공동주택 3개소(1,688세대)가 위치 해 있어 거주민들의 보행량이 많은 지역
- 특히 유아와 고령자 비율이 높아 유모차 및 보행기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보행 안전과 편의성 확보를 위해 보도 확장 필요

□ 사실관계

- 기존 보도폭이 협소하고, 가로등 및 지장물로 인해 법적 보도 유효폭(2.0m)이 확보되지 않아 보도 확장이 필요한 실정
- 확장 구간 내 일부 사유지가 편입되어 사유지 협의 보상이 선행 되어야 함에 따라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
- ※ 도시관리계획(교통시설) 미 지정에 따른 토지 강제수용 불가
- 보도 확장에 따른 차도 및 횡단보도 축소로 경찰서 사전 협의 필요

□ 관계법령 등

○ 도로법 제54조(보도의 설치 및 관리)

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.

○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 제3-2(보도의 유효폭)

가.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 교통량 및 목표 보행자 서비스수준에 의해 결정하되, 가능한 여유 있는 폭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.

나. 보도의 유효폭은 최소 2.0m 이상을 확보하되,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1.5m 이상으로 한다.

□ 판단 및 결론

○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개선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“의견표명”으로 심의·의결 : 2025. 9.

○ 해당 보도 확장 구간에 ‘사유지’가 포함돼 있어, 소유자와 사전 협의를 거쳤으나 토지 매수가 이뤄지지 않아 확장 가능 범위 내에서 신속 추진 : 2025. 9.

※ 전 구간 50m, 확장 가능구간 44m(사유지 구간(6m)은 보상완료에 따라 점진적 확장 예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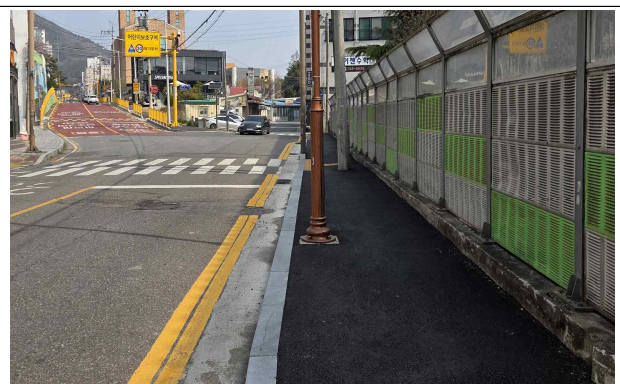
○ 보도 중앙에 위치한 신호등 이설을 위해 경찰서 및 교통관리과와 협의 후 이설완료 ※ 전신주 이설 등 한전과 협의 중 : 2025. 10.

○ 가로등(2본) 이설 및 보도 확장 완료 ※ L=44m(B=1.3m→2.2m) : 2025. 12.

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「의견표명」에 따라 시민 불편 및 안전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, 국공유지 구간 보도를 즉시 확장하는 등 신속하게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례



전



후